2022년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 공고

경기도 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2년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17일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시제품개발, 제품규격 인증 등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도약 및 지역 경제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2019년 3월 11일 이전부터 경기도 내에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제조・개발하고 있는 기업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75백만 원/1년)

□ **지원내용(요약) : 연간 최대75백만원 한도 내 기업 수요중심 Package 지원**

○ 기술/공정혁신 : 기술도입 및 보호, 공정개선·혁신 등

○ 제품혁신 : 시제품개발, 지재권, 제품규격인증 등

○ 판로개척 : 홍보물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 지원절차

지원 단계	세 부 내 용	주 체
사업공고	· 경기도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사업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하 경과원)
▼		
사업신청/ 적격검토	· 사업신청 · 서류 적격성, 지원자격의 적합성 등 검토 · 중복 수혜여부 및 제재사항 조회	신청기업→경과원
▼		
현장실태조사 및 서류평가	· 적격심사 통과 기업 현장실태조사(필요시) · 서류평가(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경과원
▼		
발표평가 및 원가분석	· 전문가 평가를 통한 우수기업 선정 ·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등 종합적 평가 · (시제품 개발 등 해당시) 전문기관 원가분석	경과원
▼		
기업선정	· 기업별 지원예산 최종 확정	경과원 → 신청기업
▼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 원가분석 결과 반영된 수정사업계획 제출 ▸ 제출서류 : 공문, 수정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신청기업 → 경과원
▼		
협약체결	· 선정기업(후보기업) 간담회(필요시) · 세부 지원내역 승인 및 협약(사업비 지급)	경과원
▼		
지원내역 수행	· 추진현황 점검(서면 또는 현장점검)	경과원→신청기업
▼		
사업완료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출 · 추진실적 및 현장점검	신청기업 → 경과원
▼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 사업비 정산 및 성과관리(종료 후 3년)	경과원 → 신청기업

2. 신청자격

□ 기준일 : 접수 마감일(2022.3.11.) 기준

□ 신청자격

유 형	자 격 조 건
필 수 조 건 (①~③ 모두 충족)	① 2019.3.11.이전부터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② 소부장의 개발 제조 매출이 50% 이상 ※ [붙임3]의 소부장 매출확인서(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제출 ※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을 받지 않은 기업도 신청가능 ③「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 충족 기업
and 선 택 조 건 (①~③중 1개 이상 충족)	①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② 직전년도 총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 2% 이상 ③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지 원 제 외	① 중소벤처기업부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 강소기업, 소부장 강소기업 100 지정기업 등 ② 경기도 고시 제2022-5003호「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에서 정한 법률 위반 기업 (사업 공모일 기준 2년이내)

3. 지원금액 및 기간 · 사업비

□ 지원금액 및 내용 : 20개사 내외(기업당 최대75백만원)

구분	지원내용	세부 내용
기술·공정 혁신	기술도입·보호	국내외 기술 도입, 기술보호(보안, 유출방지, 임치제도 등)
	디지털 공정혁신	스마트·디지털화, 로봇, IoT, 디지털 안전, 공정개선·혁신 등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개발기술 제품화, 샘플제작, 금형제작, 지그, 목업 등 제작 지원
	SW Licence	SW설계 패키지(EDA Tool), 설계자산(IP), 디자인하우스, CAD 등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출원,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제품규격인증	국내·외 제품규격 인증획득, 시험·분석, 컨설팅 지원
	기타 사업화 지원	시장정보분석(특허·시장동향), 자율과제(제품개선 관련 활동, 컨설팅 등)
판로개척	홍보 강화	홍보물, 홍보동영상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회 참가, 기업홍보 및 투자유치, GMS(해외마케팅 대행) 등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2. 12. 31. 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현금) 이상 필수 부담

[참고 1] 사업비 계상 예시

구 분	道지원금	기업부담금	총 사업비
사업비	75,000,000원 이내	18,750,000원 이상	93,750,000원
계산식	道지원금≤(총 사업비×0.8)	현금≥(총사업비×0.2)	-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전산 등록 및 제출 : 2022. 2. 17.(목) ~ 3. 11.(금) 18:00까지

□ 신청방법(온라인만 가능)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회원가입 후 전산 제출**

① 과제책임자 및 사업담당자 회원가입(2인 필수)

② 온라인 과제관리 - 신청서 작성

③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파일 압축 후 첨부파일로 제출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불가 (단, 필요시 경과원이 별도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

○ **구비서류 제출**

연번	서 식 명	해당 서류	
		필수	해당시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소정양식, 『붙임 1』 참조)	O	
②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 공고일(2022.2.14.) 이후 발급분 제출	O	
③	신청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공고일(2022.2.14.) 이후 발급분 제출)		O
④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1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https://www.rnd.or.kr/)에서 공고일(2022.2.14.) 이후 발급분 제출	O	
⑤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소정양식, 『붙임2』 참조)	O	
⑥	2018년~2020년 확정재무제표 및 2021년 재무제표확인원(세무사 날인본) 각 1부. ※2018년~2020년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표준재무제표증명' 필수 제출 ※선정기업은 2021년 확정재무제표 필수제출 (선정 후 별도 안내)	O	
⑦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0년~2021년, 세무서 발행본) 각 1부. ※종사자수는 각 연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 원천세	O	
⑧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O	
⑨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최근 1년 조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certi.kosha.or.kr) / 문의처 : 1644-4544	O	
⑩	소부장 매출실적 확인서(소정양식, 『붙임 3』 참조, 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O	
⑪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행정처분 기관에서 발급한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서 각1부. (소정양식, 『붙임 6』 참조)	O	
⑫	공장등록증 사본(필수조건에 경기도 내 공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필수제출) 1부.		O
⑬	신청자격 중 선택조건(1개 이상 충족 필수)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각1부. ※연구전담요원 2명이상(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인력 개발현황) ※2020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2% 이상(소정양식, 『붙임 4』 참조)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O
⑭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6. 평가기준 참조)		O

5. 지원제한

※ 지원(후보)기업으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②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③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④ 자본잠식 및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⑤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⑥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⑦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⑧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⑨ 대기업·중견기업

⑩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 등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⑪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고시에 의거 법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⑫ 정부 유사 지원사업에 이미 선정된 기업(월드클래스 300, 글로벌 강소기업, 소부장 강소기업 100 지정기업 등)

6. 평가기준

□ **적격심사**

○ 서류검토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중복성, 제재사항 등

○ 현장조사(필요시) : 기술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 **서류평가**

○ 재무상태(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고용증가 등

○ 서류평가 및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기업 순으로 목표 지원기업 수의 2배수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계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윤리경영	고용창출	가산점
평가항목	소계	매출증가율	영업이익율	부채비율	산업재해율	고용증가율	-
산식	-	최근 3년간 CAGR ((20년도 매출액/18년도 매출액)^(1/2)-1)×100	(단기영업이익 /당기매출액)×100	(당기부채 /당기자기자본)×100	기업 산업재해율 대비 동종업계 산업재해율 차이	((21년 상시근로자수 / 20년 상시근로자수) ×100)-100	건당 1점
배 점	106점	30점	10점	20점	10점	30점	6점

※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의 경우 2020년 기준 중소제조업경영지표 평균지표 대비 등급평가
※ 고용창출의 경우 경기도 취업자수(고용) 증가율 대비 등급평가

[참고]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건당 1점, 최대 6점으로 적용함

②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접수마감일[2022.3.11.(금)]을 이후여야 함.

- 가산점 적용대상

① 경기도 핵심전략품목(「붙임 5」 참조)을 생산하는 기업

② 소재부품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소재부품종합정보망 www.mctnet.org 발급분에 한함)

③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④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선정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⑤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 www.benis.or.kr에서 발급)

⑥ 국내·외 규격인증(UL, CCC 등 인증별 1점, 최대 3점) 보유기업

□ **발표 또는 서면평가** :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한하며,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평가항목** :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및 파급효과 등

※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기업 수와 기업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선정 취소(차순위 기업 선정)

7. 기타 공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 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 목표 등에 대한 공시

○ 수행기업은 산출된 제품 · 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조사 등을 위하여 3년간 경과원의 요청(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가입기간 : 별도 안내)

○ 발급수수료는 사업비로 인정

□ **기업선정 취소**

○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기업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수행 내용이 상이한 경우
- 제출한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기업부담금 부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종료시한 이내에 수행완료가 곤란한 경우
- 사업 신청일 이후, 사전지원제외(신청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 **부당지원수혜자 제재사항**

○ 도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의 부정사용(횡령 등) 적발시 지원금 전액환수 및 향후 경기도 지원사업에서 영구배제, 민형사상의 조치 등 실시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준용

8. 문의처

전문기관	연락처	F.A.X.	E-mail.
경과원 4차산업본부 과학기술지원팀	031)776-4855	031)776-4825	bluesky@gbsa.or.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2.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서식)

3. 소부장 매출확인서(서식)

4.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서식)

5. 소부장 핵심전략품목 및 확인서(서식)

6-1.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입 · 이용 동의서(서식)

6-2.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서식)

6-3. 행정처분 기관에서 발급한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서(조회방법 참조)

7.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고시

[참고1] : 소부장 산업의 범위 1부

[참고2] : GMS 소개자료 1부 . 끝.